

선별진료소 설치 과업지시서

메르스 위기상황 발생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최일선 기관으로서 보건소 역할 강화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 수행

1. 과업명 :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실시설계용역

2. 과업의 목적

강남구보건소 외부 보건소 별관 건물을 활용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검체채취실 공간분리 및 음압조성 시설 등을 설치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에 제반된 쾌적하고 위생적인 선별진료소 내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과업 개요

가. 과업범위

용역규모	구 조	설계구분	주 요 내 용
보건소 별관 1,2층	철근콘크리 트조	선별진료소 설치 (음압조성) 및 사무실 내부공사 (사무실 재배치)	검체채취실을 별도 구성하여 음압 공조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인테리어 실시설계

나.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(삼성동 8번지 외 1)

다. 기능 : 선별진료소 및 사무실 등

4. 과업지시서 적용 구분

본 과업지시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 음압조성 및 사무실 실내인테리어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.

5. 용어의 정의

- 가. “건축사”라 함은 설계용역 책임을 맡은 용역자를 말한다.
- 나. “감독관”이라 함은 계약된 설계전반에 걸쳐 지시, 승인 및 기타 총괄적인 감독을 담당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보건소(이하 발주청)에서 임명 또는 위임한 자로서 건축사가 납품하는 모든 설계도서의 검사 등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다. “검수관”이라 함은 계약된 설계전반에 걸쳐 최종 납품하는 설계도서의 검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6. 용역 시행 기간

- 가. 본 영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.
- 나. 건축사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 및 설계예정 공정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.
- 다. 건축사는 용역기간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그 성과를 제출토록 한다.

7. 건축사의 업무 수행

- 가. 건축사는 계약 후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확보재원(예산)과 배치계획, 계획요소 내용, 설계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국내의 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 설계에 임하여 본 과업 성과가 양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건축사는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발주청과 함께 배치도, 평면도, 전개도, 주단면도 및 벽면전개도 등을 협의한다.
- 다. 건축사는 발주청이 필요로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용도의 계획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(1) 설계검토용 기본설계 도면
 - (2) 기타 필요한 자료
- 라. 건축사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지정한 검수관에게 계획안을 설명하고 협의를 받아야 한다.

8. 과업 범위

- 가. 사전 조사 내용
 - 건축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거나 자료의 미비 또는 불충분한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.
 - (1) 음압조성 및 인테리어 설계대상 사무실 내 검체채취실 등 각 실의 특성조사 및 분석과 기존 사무실 재배치 조사 분석 및 계획

(2) 급, 배수 관계의 조사 : 급, 배수 및 오수처리 계통

(3) 전기(소방포함), 통신 및 LAN관계의 조사

- ① 전압의 변동 사항
- ② 전기 부하량 및 계통
- ③ 전화, LAN 계통

나. 실내인테리어 설계

(1) 인테리어 설계는 건축사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작성하며,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제반요소와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.

(2) 계획의 방향

보건소 별관 1층 선별진료소 설치 시 진료실 및 검체채취실 공간을 별도 확보하여 음압공조시스템을 설치해 감염병 예방시설을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, 그로 인해 변경되는 기존 사무실 업무공간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설계한다.

- ① 진료실 및 검체채취실의 음압공조시설의 기능성 강화
- ② 기능성 있는 계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집기배치의 공간 효율성 도모
- ③ 불필요한 공간을 철거하고 공간 재배치를 통한 여분 공간 최대한 활용
- ④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 도모

(3) 설계 계획의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

- ① 별도의 공간을 확보 및 구성하는 진료실 및 검체채취실은 추가로 첨부되는 “서울시 검체채취실 음압 설치 권고안”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 충족되게 설계되어야 한다.
- ② 선별진료소 내 진료실 및 검체채취실을 제외한 공간들은 발주청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.

다. 실시설계

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 이전에 공종별 설계기준 각종 조건을 분석 기준안을 작성 구체화하여 공사 시공에 필요한 시방 및 공사비 내역서, 설계도 작성 등의 세부 실시계획을 하여야 한다.

(1) 공통분야

- ① 표준시방서
- ② 공사비 내역서(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, 기존 사무실 재배치 비용 포함)

(2) 인테리어

보건소 별관 건물 내부 바닥. 벽. 천정 및 인테리어 설계

(3) 기계설비, 전기(소방포함)

- ① 급기 및 배기 등 공조배관 설비에 관한 설계
- ② 사무실 내 전기(조명), 전화, 방송, LAN설비

라. 공사시방서

- (1) 시방서는 도면에 의한 시공, 시방 사항을 작성한다.
- (2) 공사시방서 작성 시는 별도의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다.

마. 수량산출조서, 공사비내역서, 일위대가표

- (1)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,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.
- (2)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 받은 물가조사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,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(대한건설협회)를 기준 하여 작성한다.
- (3) 상기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9. 과업수행 일반사항

가.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시에는 착수계, 과업 수행 계획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과업 진행보고

- (1) 진행보고서는 과업완료 이전에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이 직접 보고한다.
- (2)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는 즉시 보고한다.

다.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과 각종 시방서 및 자료를 수집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.

라. 현장대리인 지명 및 교체

- (1) 수급자는 대리인을 지명할 때에는 당해 기술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기술 자격자증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.
- (2) 대리인은 발주자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
- (3) 과업수행 중 감독관은 현장대리인, 수급인의 고용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마. 보안사항

- (1)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
(2)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

(3)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.

바. 안전대책 및 기타사항

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인근 주민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보상 및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.

사. 설계변경 및 중지조건

(1)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

(2)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(3)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
(4) 설계용역 금액은 추정사업비로 산정하였는바, 설계 후 공사금액이 감되는 경우에 정산 처리한다.

10. 특수조건

가. 본 설계과업은 설계에 적용되는 관계법규 및 기술, 건설표준품셈,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.

나. 건축사는 설계도중 기계설비, 전기, 통신설비 등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설계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.

다. 설계도서의 작성

(1) 설계도서의 작성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며,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부분 또는 이의가 있거나 설계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(2) 건축사는 기본지침 및 평면도 등의 기본자료가 현지 여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라. 설계 작업 협의 및 검토수정

(1)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도중 감독관은 수시로 작업장에 입회하여 문제점을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관해서 검토 수정을 가할 수 있다.

(2) 건축사는 감독관이 작업성과를 분석, 검사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.

- 설계도서 납품목록 -

납품도서명	내 용	수량	비고
1) 설계도서	CD-ROM	1조	공종별
2) 일위대가표, 단가산출서	A4	5부	“
3) 설계도면	A3	5부	“
4) 공사 시방서	A4	5부	“
5) 수량 산출서	A4	5부	“